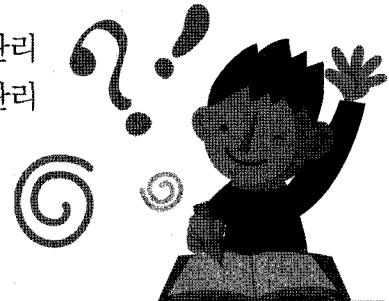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위탁폐수의 자가처리는?

당사는 150m³/일 폐수배출시설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위탁폐수발생량은 2m³/일입니다. 환경관련 비용 절감부분을 생각하다 위탁폐수의 자가처리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폐수의 성상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와 성상 및 오염물질은 똑같으나 CN 농도가 많이 높아서 기존에는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충분한 반응 시간 및 체류시간을 유지할수 있어 위탁폐수의 자가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폐수의 일부(1m³/일) 자가처리를 하고 일부(1m³/일)는 위탁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① 위와 같이 처리를 할려고 하면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가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② 전량 자가처리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당초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하므로, 귀 사업장의 위탁폐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폐수를 자가처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기배출시설 신고는?

NaOCL2(용량 : 0.5m³)와 염산(농도 : 9%, 용량 : 0.5m³)를 혼합하여 이산화 염소를 만들어서 식수용

용수에 소독의 목적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가, 2)호에 따라 이 염산탱크는 동일 사업장에 동종시설(무기산 저장시설)의 합계가 50m³이상에 해당됨. 염산은 용도가 식수의 소독용이며, 저농도(9%)이고, 용량이 0.5m³로 소규모인 경우에도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6) 규정에 의거, 유·무기산의 농도와 관계없이 동종시설의 합이 50m³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가스류만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의 배출시설 인허가는?

저희 회사에서 5톤 노통연관 보일러 1대(연료 B-C유)가 배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LNG가스 인입공사를 실시하여 2톤 관류보일러 2대(연료 LNG)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배출시설로 등재된 보일러를 폐기만 하면 되는지요? 어떤 분은 신규설치를 했으니 방지시설 업체를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를 합니다. 현재 대기4종업체이며 배출구는 보일러 하나입니다. 나머지 배출시설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입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4) 규정에 의거, 가스류(LNG가스 등)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시설은 배출시설 분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연관 보일러를 폐쇄하고자 한다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Q 오래된 페인트의 처리방법은?

A 창고등을 정리하다 보니 5년이 넘은 페인트가 많이 있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0kg로 말통으로 열 개 정도인데 개봉한 것도 있고 개봉하지 않은 채 5년이 넘은것도 있습니다.

A 귀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페인트 양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지정폐기物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 동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Q 행정처분의 승계여부는?

A A사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 중 행정처분(조업정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행정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상태) B사가 시설물을 양수 받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B사가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음)

- 1) 행정소송이 종료(또는 취하)될 경우 A사가 받은 행정처분도 B사로 승계가 되어 행정처분(조업정지)도 B사가 받게 되는지?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권리 의무 승계는 신고 권한에 대해서만 승계한다는 의미인지, 신고권한 외에 행정처분(위반횟수 포함)까지 승계한다는 의미인지?
- 3)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간 언급이 전혀 없더라도 B사로 행정처분이 승계되는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수 또는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 당사자간 언급이 없었더라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행정처분(위반횟수 포함) 사항 등이 자동승계 됨을 알려드립니다.

Q 2011년 자동차 매연 측정방법은?

A 지난 1월 6일자(환경부령358호)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휘발유(lpg) 차량의 저속 및 고속 엔진회전측정 및 검사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하는 법이 연기사유로 인하여 10월 31일까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매연 차량 측정방법 또한 현재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개선 및 변경이 되는데 이는 변동없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10. 1. 6)으로 여지반사식에 의한 매연측정 방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2011년부터는 광투과식으로 측정방법이 변경되며, 일정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